



규약

시행 일자: 2025년 4월 3일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목차

서문	4
<u>제1장: 총칙</u>	<u>5</u>
제1조	명칭, 법적 지위, 승인, 사무소 5
제2조	목적, 원칙, 자율성, 수련, 협력 5
제3조	공식 언어 및 업무 언어 7
<u>제2장: 조직</u>	<u>8</u>
제4조	구성 8
제5조	총회 9
제6조	집행위원회 13
제7조	집행부 16
<u>제3장: 회원</u>	<u>18</u>
제8조	회원국가협회 18
제9조	대륙연맹 22
제10조	세계태권도연맹의 권한 24
<u>제4장: 대회</u>	<u>25</u>
제11조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대회 25
제12조	교육 과정 27
<u>제5장: 재무</u>	<u>27</u>
제13조	재무 27
<u>제6장: 위법 행위, 징계 조치, 이의 신청</u>	<u>28</u>
제14조	위법 행위 신고 28
제15조	징계 조치 28
제16조	이의 신청 29

제7장: 기타 조항 **29**

제17조	비대면 회의	29
제18조	면책	29
제19조	지식재산	29
제20조	매채권 및 상업적 권리	30
제21조	해산	30
제22조	개정	30
제23조	해석	31
제24조	시행	31

별지 I: 상설 커미션 및 위원회 **32**

서문

1. 태권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도인’의 심신과 정신을 단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태권도는 스포츠로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련 인구를 가진 무술로 자리 잡았다.
2.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련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73년 창설되었다. 이후 태권도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주도하에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0년에는 도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3.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회원으로서 200개가 넘는 회원국가협회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경기연맹 중 하나이면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두 개의 아시아 스포츠 중 하나이기도 하다.
4. 세계태권도연맹은 ‘평화는 승리보다 귀하다’는 정신 아래 ‘하나의 세계, 하나의 스포츠 태권도’라는 비전을 추구한다.
5. 세계태권도연맹의 사명은 세계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태권도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 체육인에서 엘리트 체육인까지 모든 이들이 나이와 성별, 종교, 인종,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관람 및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아울러 세계태권도연맹은 평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증진하고 교육과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탁월성, 청렴성, 존중, 관용, 포용성, 리더십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 비전과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법적 지위, 승인, 사무소

- 1.1 명칭 및 법적 지위: 세계태권도연맹은 한국에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국제기구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본 규약 및 본 규약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방어할 능력이 있다.
- 1.2 승인: 세계태권도연맹은 IOC와 IPC로부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태권도를 관장하는 유일의 기구로 승인을 받았다.
- 1.3 사무소: 세계태권도연맹은 대한민국 서울에 본부를 두고 스위스 로잔에 연락 사무소를 운영한다.

제2조 목적, 원칙, 자율성, 수련, 협력

- 2.1 목적: 세계태권도연맹은 무술의 전통과 가치에 따라, 또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운동의 곳 거버넌스라는 보편적, 기본적 원칙에 입각하여 전 세계에서 태권도 종목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운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2.1.1 올림픽 스포츠와 패럴림픽 스포츠, 가상 스포츠에서의 태권도를 관리한다.
 - 2.1.2 개별 국가 또는 자치령에서 하나의 기관을 회원으로 승인하고, 회원을 규율하는 각종 규칙과 정책, 실무를 수립 및 관리함으로써 태권도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한편 모든 대륙과 국가, 영토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수련을 확대하고 발전시킨다.
 - 2.1.3 회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회원의 역량을 개발하며 회원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 2.1.4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타 종합 스포츠 경기 등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경기를 규율할 기술 규칙을 제정한다.
 - 2.1.5 국제 수준의 태권도 대회와 토너먼트, 선수권대회를 조직, 진행, 신설하고 회원을 비롯해 기타 승인 받은 이해관계자가 개최하는 국제 경기가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한다.
 - 2.1.6 태권도의 교육적, 문화적, 인도주의적 가치와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전 세계에서 태권도 종목의 수련을 증진, 확대, 개선한다(이하 ‘태권도 운동’).
 - 2.1.7 태권도가 생활 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 2.1.8 스포츠 참여를 통한 평화와 협력을 장려한다.
 - 2.1.9 스포츠에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적절한 상업 활동에 참여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2.1.10 태권도 케어스(Taekwondo Care)를 비롯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태권도박애재단 같은 인도적 활동을 지원한다.

2.1.11 세계태권도연맹 갈라 어워즈, 세계태권도연맹 지속 가능성 어워즈,
세계태권도연맹 명예의 전당 같은 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1.12 국제사회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 조직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는
태권도장을 통해 전 세계에서 태권도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의 목적과 원칙을 지키고 고양한다.

2.1.13 가상 태권도(Virtual Taekwondo)를 도입 및 장려하며 적절한 경우 젊은 세대와
디지털을 매개로 소통하고 모든 연령과 다양한 인구를 포용하기 위해 e-
스포츠를 수단으로 활용한다.

2.2 원칙: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 헌장」 및 「IOC 윤리 규정」의 보편적, 기본적
원칙을 준수하며, 본 규약의 어떤 조항도 그러한 원칙과 상충하거나 이를 훼손하지
않는다. 세계태권도연맹과 산하 회원국가협회 및 대륙연맹(이하 통칭하여 ‘회원’)은
세계태권도연맹 가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2.2.1 생활 체육 스포츠: 태권도는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스포츠이며, 태권도를 취미로 즐기는 이들부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최정상급 엘리트 체육인까지 모든 이들을 위한 스포츠이다.

2.2.2 페어플레이: 세계태권도연맹과 그 회원은 태권도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선수와 관계자, 운영자 등 경기 참가자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존중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스포츠 정신과 청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2.2.3 괴롭힘 없는 스포츠: 태권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괴롭힘 없는 환경에서
경쟁하고 일하며 활동할 권리가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신체적, 심리적
괴롭힘을 불문한 일체의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수 보호 정책」 참조.

2.2.4 양성평등: 태권도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활발한 태권도 운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세계태권도연맹 내부에서, 아울러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각종 경기와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2029년까지
집행위원회와 커미션, 위원회에서 남녀 동수 대표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2.5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태권도연맹은 실제로 경기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2.2.6 차별 금지 및 윤리: 세계태권도연맹은 인종, 피부색, 종교적 신념, 출신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신체 특성, 언어, 종교, 장애 여부, 국적, 정치적
지위, 사회 경제적 지위, 운동 능력, 출생 등 차별의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부적절한 차별이 세계태권도연맹의 결정이나 조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거래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자는 비차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수 보호 정책」 참조.

2.2.7 선수 중심 접근법: 세계태권도연맹은 선수를 태권도 스포츠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모든 수준에서 선수의 복리와 발전, 권한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선수

중심 접근법을 실행하는 데 힘쓰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수 선언」 참조.

2.3 자율성

- 2.3.1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 헌장」 제25조에 따라 태권도 스포츠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회원국가협회와 대륙연맹은 정치적, 종교적, 금전적 압력 등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에 대한 준수 의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조직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제3자가 그 운영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2.3.2 외부의 간섭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간섭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세계태권도연맹에 보고해야 한다.
 - 2.3.3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은 선거 또는 내부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거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2.3.4 세계태권도연맹은 본 조항을 위반한 회원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4 모범 사례: 세계태권도연맹은 전술한 자율성 원칙을 비롯해 IOC와 IPC, 기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운동 관련 국제경기연맹 등의 모범 사례를 태권도 스포츠의 거버넌스와 운영 방식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이하 ‘모범 사례’). 이러한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세계태권도연맹의 임원 및 집행부의 사익 추구와 관련한 정책 및 제재
 - 투명한 회계와 정확한 부기
 - 사회적 책임 정책
- 2.4.1 세계태권도연맹은 「반부패 정책」, 「반도핑 규칙」, 「차별금지 정책」, 「이해충돌방지 정책」, 「징계 조치 및 이의 신청 규정」, 「선거 세칙」, 「재무 규칙」, 「청렴성 규정」, 「의무 규정」 및 「안전 규칙」, 「승부 조작 방지 규정」, 「선수 보호 정책」, 「지속가능성 정책」 등과 같은 준거 문서와 그 밖의 문서에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이를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모든 회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범 사례를 준수해야 한다.
- 2.5 협력 기관: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성을 갖춘 외부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다.
- 국기원 -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및 품/단 심사
 - 태권도진흥재단 - 대한민국 무주군 소재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의 운영 및 태권도원의 관리
 - 태권도평화봉사단 - 저개발국가에 젊은 태권도 사범 파견
 - 태권도박애재단 - 태권도를 매개로 한 청년 난민 및 실향민의 자립 지원
 - 세계태권도-우시센터 - 태권도 교육 관련 연구 및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개최
 - 아시아발전재단 - 태권도 케이스 프로그램 지원

제3조 공식 언어 및 업무 언어

- 3.1 공식 언어: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한다.

- 3.1.1 규약 및 경기 규칙: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 그리고 「경기 규칙 및

해설」 및/또는 각각의 개정본은 공식 언어로 발행된다. 「경기 규칙 및 해설」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 전문 용어를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3.2 업무 언어: 세계태권도연맹과 그 사무국, 집행위원회, 총회, 커미션, 위원회의 업무 언어는 영어이다.

3.2.1 준거 문서: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규칙과 규정, 공식 지침은 영어로 발행된다.

3.2.2 의사 절차: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의록과 각종 절차, 서신, 세미나, 교육, 공지 등에는 영어를 사용한다.

3.2.2.1 회원은 전술한 내용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할 책임이 있다. 모든 회원은 자국의 언어로 발언하거나 기록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

4.1 세계태권도연맹의 구성과 운영은 (i) 참여, (ii) 투명성, (iii) 준수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둔다.

4.2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와 운영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총회(제5조 참조)
- 집행위원회(제6조 참조)
- 집행부(제7조 참조)

4.2.1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총재(제7.2조 참조)
- 사무총장(제7.3조 참조)
- 사무국(제7.4조 참조)

4.3 커미션 및 위원회

4.3.1 세계태권도연맹은 자문에 응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술한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을 뒷받침할 커미션과 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설 커미션과 위원회의 목록은 <별지 I>를 참조한다.

4.3.1.1 위임 사항: 각 커미션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집행위원회 또는 총재는 그 소관 및/또는 책임하에 있는 업무의 실행을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집행부는 커미션 및 위원회별로 연락 담당자를 둔다.

4.3.1.2 회의 및 보고: 커미션과 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각의 회의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출하며, 특히 커미션은 총회에 제출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들 보고서는 커미션 또는 위원회가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공개된다. 회의는 전자적 방식이나 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커미션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3.1.3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의 임무를 고려하여 공개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선출한다.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최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출된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본 규약에서 '1년'은 잇달아
개최된 두 번의 정기 총회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4.3.2 임시 위원회: 총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임시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임시 위원회의 위임 사항과 결과 보고서는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4.3.3 커미션 및 위원회 위원의 공식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지급 정책과 절차는
「재무 규칙」에 명시한다.

제5조 총회

5.1 총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합이다.
총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그 결정은 최종적이다.

5.1.1 정기 총회: 총회의 연례 정기 회의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또는 세계태권도
청소년 선수권대회 개최지에서 매년 개최한다.

5.1.1.1 소집 통지: 정기 총회 소집 통지서는 개최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발송한다. 정기 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총회 일자와 시각, 진행
방식, 장소 및 논의 대상 안건을 명시하여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 대륙연맹에 송부한다. 상기
대상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더라도 총회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5.1.1.2 안건 및 회의 자료집: 총회의 안건 초안은 총회 1개월 전까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 대륙연맹에 송부한다. 최종 안건과 회의
자료집은 총회 2주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 대륙연맹에
송부한다.

5.1.1.3 정기 총회의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유효 투표권자 3분의
2의 동의가 없으면 심의할 수 없다.

5.1.2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분명한 사유와 함께 소집을 요청하고 3개월 이내에,
또는 레벨 I 회원국가협회 3분의 1 이상이 분명한 사유와 함께 소집을
요청하고 3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임시 총회의 일자와 장소, 진행 방식,
안건은 총재가 지정한다.

5.1.2.1 소집 통지: 임시 총회 소집 통지서는 개최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발송한다. 임시 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총회 일자와 시각, 진행
방식, 장소 및 논의 대상 안건을 명시하여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 대륙연맹에 송부한다. 상기
대상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더라도 임시 총회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5.1.2.2 안건 및 문서: 임시 총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집은 임시 총회 2주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 대륙연맹에 송부한다.

5.1.2.3임시 총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유효 투표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없으면 심의할 수 없다.

5.2 정족수: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는 회의에 참석한 유효 투표권자(투표권이 있는 집행위원 및 레벨 I 회원국가협회)의 단순 과반수로 한다.

5.3 총회 투표: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자격 집행위원과 레벨 I 회원국가협회가 투표권을 갖는다. 결의안과 기타 결정은 총회에 출석한 유효 투표권자의 단순 과반수로 통과된다. 기권표, 빈 투표지나 훼손된 투표지는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나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결정은 총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즉시 발효된다.

5.3.1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선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안건의 표결은 통상 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단, 한 명 이상의 대표자가 무기명 투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표결에 부쳐 단순 과반수로 결정한다.

5.4 의장: 선거를 제외하고 총회의 의장직은 총재가 수행하며 선거에서는 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직을 맡는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며 모든 회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총회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5.4.1 총재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총회에 출석한 부총재 중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부총재가 총회를 주재한다.

5.5 총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5.5.1 직전 총회의 회의록 승인

5.5.2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접수

5.5.3 연간 재무제표 및 독립적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

5.5.4 재무위원회의 감독하에 집행부가 작성한 예산안 승인

5.5.5 집행위원회가 기승인한, 집행부의 운영 보고서 및 운영 계획 승인

5.5.6 집행위원회가 기승인한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경기 규칙 및 해설(겨루기, 품새, 장애인태권도, 청각장애인태권도)」, 「장애인태권도 선수분류 규칙」 등의 개정안 승인

5.5.7 본 규약에 기술된 세계태권도연맹 임원 선출

5.5.8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권고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회원 자격 박탈 결정 추진

5.5.9 기타 중요한 사안 논의

5.6 총회는 상기에 열거한 직무를 제외하고 그 소관 및/또는 책임하에 있는 사안을 집행부 또는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5.7 회원국가협회의 대표

5.7.1 대표 구성

5.7.1.1 각각의 레벨 I 회원국가협회는 모든 총회에 최대 2명(가급적 남녀 각 1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발언권과 투표권은 이 중 1명에게만 부여된다(이하 ‘투표권 있는 대표’). 회원국가협회의 회장이 집행위원 같은 별개의 자격으로 투표권을 갖는 경우, 투표권 있는 대표로서의 권리를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다른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5.7.1.2 각각의 레벨 II 및 레벨 III 회원국가협회와 준회원 및 임시 회원은 모든 총회에 1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5.7.2 회원국가협회의 대표는 통상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회장이 맡는다. 레벨 I 회원국가협회의 회장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권 있는 대표로서의 권리를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다른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5.7.3 위임을 받은 대표는 자신이 대표하는 회원국가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된 자여야 한다. 대표 자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위임을 받은 대표는 회원국가협회 내에서의 지위를 집행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5.8 임원 선거: 선거를 위해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i) 총재, (ii) 부총재, (iii) 집행위원, (iv)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감사를 선출한다.

5.8.1 총재: 총회에서는 1명의 총재를 선출한다. 선출된 총재가 회원국가협회 및/또는 대륙연맹에서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총재로 선출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직책에서 사임해야 한다.

5.8.2 선출직 부총재: 총회에서 선출되는 부총재는 4명이다. 이 중 3명은 각기 다른 대륙 출신이어야 하며 집행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여성 집행위원 1명이 부총재로 승격된다.

5.8.3 선출직 집행위원: 총회는 총 14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대륙별로 최소 1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5.8.3.1 여성 집행위원의 부총재 승격: 집행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여성 집행위원은 부총재로 승격되며 그 임기는 집행위원의 임기로 계산한다.

5.8.4 감사: 총회는 1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감사는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초청될 수 있으나 집행위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5.8.5 선출직 임원의 연령 제한: 선거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경우에만 선출직 집행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2021년 선거 당시 현직 임원으로 재임 중이었던 자는 만 80세까지 입후보할 수 있다. 제한 연령에 도달한 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5.8.6 선출직 임원의 임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4년이다. 본 규약에서 ‘1년’은 잇달아 개최된 두 번의 정기 총회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임기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선거가 치러진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또는 세계태권도 청소년 선수권대회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

- 5.8.7 선출직 임원의 연임 제한: 개인은 집행위원회의 각 직책당 최대 3회까지 재임이 가능하며 집행위원회 내의 다른 직책에는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최대 3회까지만 재임이 가능하다.
- 5.8.8 후보자 추천: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해당 후보자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레벨 I 회원국가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직 임원은 회원국가협회의 추천 없이 집행위원회 내의 동일 직책 또는 다른 직책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
- 5.8.8.1 입후보 지원서: 후보자 신청서와 행동강령, 회원국가협회의 추천서 등의 후보 신청 서류를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회원국가협회와 집행위원회에 회람시키고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후보자는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를 선거일 90일 전까지 집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신청 서류를 수령한 뒤 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서류를 준비한다. 총회 현장에서는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 5.8.8.2 집행위원회 선거 후보자는 한 번에 하나의 선출직에만 입후보할 수 있다.
- 5.8.9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에서 선거 절차를 관리하고 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재가 임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된 선거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 서류를 심사 및 승인하며 선거가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선거 세칙」에 따라 실시될 수 있게 한다.
- 5.8.9.1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 심사 후 유자격 후보자의 명단을 확정한다.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문제는 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한다. 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최종 후보자 명단은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에 회람시키고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5.8.9.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위원회 선거 관련 사항은 「선거 세칙」에서 규율한다.
- 5.8.10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선거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총재에게 통지해야 하며 총재는 해당 사안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집행위원회는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총회에서는 재검토, 재선거, 재투표 또는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에 출석한 유효 투표자만이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9 전자 투표: 총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팩스나 전자 우편 등의 통신을 통해 집행위원회 및/또는 총회에 결의안을 송부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전자 투표도 투표 자격 요건과 결정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 투표의 정족수는 유효 투표권자 단순 과반수의 수신이 확인되면 충족된다. 회수된 투표지 중 기권표나 무효표(빈 투표지 또는 훼손된 투표지)는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나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수되지 않은 투표지는 정족수 계산과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효한 투표지를 기준으로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은

- 통과된다. 투표 결과는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차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 5.10 회의록: 총회의 모든 회의와 기타 절차는 사무총장의 감독하에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 회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제6조 집행위원회

- 6.1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총회에 참석하고 본 규약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 6.1.1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청렴성을 갖추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청렴성 규정」의 조항을 조건 없이 준수하기로 서약한 이들만이 집행위원회의 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거주하는 국가에서 전과가 있는 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자는, 청렴위원회에서 그 범죄 행위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 6.1.2 집행부에 사전 통지하지 않고 2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 6.1.3 선출직 집행위원이 세계태권도연맹에 피해를 주거나 세계태권도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청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집행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6.1.4 집행위원의 공식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지급 정책과 절차는 「재무 규칙」에 명시한다.
- 6.2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총재가 임명한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총재	1	총회에서 선출
부총재	5	총회에서 선출되는 3명 선출직 집행위원 중에서 최다 득표한 여성 1명 총재가 임명하는 1명
사무총장	1	총재가 임명
재무	1	총재가 임명
집행위원	17	13명(총회에서 14명의 위원을 선출하며, 대륙별로 최소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다 득표한 여성 집행위원이 부총재로 승격된다) 선수위원회 공동 위원장 2명(선수위원회는 선수가 선출) 총재가 임명하는 1명 당연직: 국기원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1명
합계	25	

- 6.3 총재: 제7.2조 참조

6.4 부총재

6.4.1 부총재의 직무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위임한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6.4.2 부총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총회에서 선출되는 3명
- 선출직 집행위원 중에서 최다 득표한 여성 1명
- 총재가 임명하는 1명

6.5 사무국: 제7.3조 참조

6.6 재무: 재무는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별지 I> 참조.

6.7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7.1 선출직 집행위원: 제5.8.3조 참조.

6.7.2 임명직 집행위원

- 임명: 집행위원회의 공평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전문성과 자질, 다양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을 임명한다.
- 임기: 임명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 또는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때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본 규약에서 '1년'은 잇달아 개최된 두 번의 정기 총회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 해임: 총재는 그 재량에 따라 임명직 집행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

6.7.3 선수위원회 공동 위원장: 선수위원회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공동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수위원회는 현역 선수들이 선출한다.

6.7.4 당연직 국기원 대표: 국기원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다.

6.8 권한 및 책임: 집행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6.8.1 직전 집행위원회의 회의록 승인

6.8.2 총회의 안건 승인

6.8.3 총회에 제출하는 연간 재무제표 및 독립적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

6.8.4 재무위원회의 감독하에 집행부가 수립한 예산안을 승인하여 총회에 제출

6.8.5 집행부가 작성한 운영 보고서 및 운영 계획을 승인하여 총회에 제출

6.8.6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경기 규칙 및 해설」, 「장애인태권도 선수분류 규칙」 등의 개정안을 승인하여 총회에 제출

6.8.7 본 규약 제5.5.6조에 명시되지 않은 준거 문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승인

6.8.8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 유치 도시 선정

6.8.9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권고에 따른 회원국가협회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 결정 승인(단,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함)

- 6.8.10 총재가 집행위원회에 위임한 사안에 대한 논의 및/또는 결정
- 6.8.11 집행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총재에게 위임할지 여부 결정
- 6.9 의무: 집행위원은 소속 회원국가협회나 기관, 지역, 영토의 대표가 아닌 세계태권도연맹의 대표로 집행위원회에 참여한다. 집행위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행동하며 이해 충돌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 집행위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청렴성 규정」과 「이행 충돌 방지 정책」을 알고 이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6.10 회의: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는 정기 총회 전에 총재가 소집한다. 임시 집행위원회 회의는 임시 총회 전에 또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마다 소집한다.
- 6.10.1 정족수: 회의는 집행위원의 단순 과반수로 성립한다.
- 6.10.2 위원장: 총재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집행위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총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부총재 중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부총재가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6.11 의사 결정 및 효력: 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달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발효된다. 회의의 안건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회의에 출석한 유효 투표권자 3분의 2의 동의 없이는 심리할 수 없다.
- 6.12 투표: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총장과 재무를 제외한 집행위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결의안과 기타 결정은 회의에 출석한 유효 투표권자의 단순 과반수로 통과된다.
- 6.12.1 기권표 및 빈 투표지나 훼손된 투표지는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나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 6.12.2 유치 도시 선정 등 특별한 경우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규정한다.
- 6.12.3 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달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발효된다.
- 6.13 전자 투표: 총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팩스나 전자 우편 등의 통신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결의안을 송부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전자 투표도 투표 자격 요건과 결정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 투표의 정족수는 유효 투표권자 단순 과반수의 수신이 확인되면 충족된다.
- 6.13.1 회수된 투표지 중 기권표나 무효표(빈 투표지 또는 훼손된 투표지)는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나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수되지 않은 투표지는 정족수 계산과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효한 투표지를 기준으로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투표 결과는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차기 집행위원회 회의와 총회에서 보고한다.
- 6.14 회의록: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기타 절차는 사무총장의 감독하에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집행위원회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회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 6.15 집행위원 교체: 집행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로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집행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총재가 전임자와 출신 대륙이 같은 개인 중에서 후임자를 지명하면 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6.16 명예 총재: 총재는 이전에 총재로 재임했던 이들 중에서 명예 총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명예 총재는 집행위원이 아니며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명예 총재는 초청을 통해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명예 총재의 임기는 4년 또는 현직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때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하며, 총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 총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6.17 명예 부총재: 총재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전임 부총재들 중에서,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전임 부총재의 남다른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예 부총재를 임명할 수 있다. 명예 부총재의 임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2년 또는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때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명예 부총재는 초청을 통해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 6.18 집행위원회의 위임 사항: 자세한 내용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집행위원회 위임 사항(TOR)」 참조.

제7조 집행부

- 7.1 집행부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임원들로 구성된다.

- 총재
- 사무총장
- 사무국

7.2 총재

- 7.2.1 총재의 직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7.2.1.1 세계태권도연맹을 이끌고 대표한다.

7.2.1.2 의장과 위원장으로서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이끌고 회의와 기타 활동을 주재한다.

7.2.1.3 태권도 스포츠와 세계태권도연맹 운영의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에게 공식 직무를 지정한다.

7.2.1.4 커미션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본 규약 또는 관련 규칙에서 달린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7.2.1.5 긴급 조치: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총재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 및 총회에서 해당 긴급 조치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1.6자문: 총재는 자문 또는 특별보좌인을 임명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전반적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 또는 특별한 사안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7.2.2 승계: 총재가 사임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최다 득표로 선출된 부총재가 총재 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7.2.2.1총재 대행은 임명권을 갖지 않는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재 대행이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총재 대행은 다음에 예정된 총회에서 상기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총재 선거를 요청해야 한다. 이 임시 선거의 당선자가 자격이 상실된 총재의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7.3 사무총장

7.3.1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7.3.1.1세계태권도연맹 조직에 관한 사무국의 사무 및 사무국과 관련한 기타 일반 사무를 기획, 실행, 관리한다.

7.3.1.2운영 보고서, 재무 보고서, 예산이 명시된 운영 계획 등을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7.3.1.3필요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세계태권도연맹이 다른 기관 및 기업과 맺는 모든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한다.

7.4 사무국

7.4.1 세계태권도연맹은 총재 및 사무총장의 사무와 직무를 집행할 사무국(이하 '사무국')을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에 둔다.

7.4.2 사무국은 세계태권도연맹 운영과 관계된 제반 분야를 관장한다. 사무국이 관장하는 분야로는 i) 국제 협력 및 개발, ii) 스포츠 및 대회 관리, iii) 전략 수립, iv) 행정, v) 법무, vi) 재무, vii) 마케팅 및 홍보 등이 있다. 사무국의 각 부처는 이러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유관 위원회 및/또는 커미션과 협력하여 상기의 분야와 관련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해 실행한다.

7.4.3 회계 및 재무: 사무국은 세계태권도연맹의 회계와 재무를 관리하며,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단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간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독립된 공인 회계법인(이하 '독립 감사')이 수행한다. 독립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재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다. 재무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감사보고서를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7.4.4 총재는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재는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관할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기회 균등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국적, 혈통, 신체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분리하지 않는다.

7.4.5 자세한 내용은 「세계태권도연맹 사규」 참조.

제3장: 회원

제8조 회원국가협회

8.1 회원국가협회의 정의: 개별 국가 또는 자치령에서 태권도를 관장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이 적법하게 승인한 기관

8.1.1 하나 이상의 기관이 국가 또는 자치령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분쟁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처리한다.

8.1.2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지 않거나 세계태권도연맹과 대립하고 있는 다른 국제 태권도 기구에 소속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서도 안 된다.

8.1.3 회원국가협회의 집행이사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 없이 다른 회원국가협회의 집행이사직을 겸직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과 대립하고 있는 다른 기구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8.2 회원 등급: 세계태권도연맹은 회원국가협회의 등급을 정회원(레벨 I, 레벨 II, 레벨 III)과 준회원, 임시 회원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8.2.1 정회원: IOC가 승인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존재하는 국가 또는 자치령의 회원국가협회. 정회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회원 지위는 매년 정기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갱신된다.

8.2.1.1 레벨 I 회원: 본 규약에 규정된 참가 요건을 충족한 회원국가협회. 레벨 I 회원국가협회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8.2.1.2 레벨 II 회원: 본 규약에 규정된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국가협회. 레벨 II 회원국가협회는 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으나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 행사에 참가가 허용된다. 레벨 II 회원국가협회가 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은 정기 총회 개최 2개월 전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레벨 I 회원 지위를 복원한다.

8.2.1.3 레벨 III 회원: 레벨 II 회원 지위를 연속해서 4년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가협회. 레벨 III 회원국가협회는 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으나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 행사에 참가가 허용된다. 레벨 III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관련 NOC 및 대륙연맹과 협의하여 레벨 III 회원국가협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해당 회원국가협회를 운영할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레벨 III 회원국가협회가 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은 정기 총회 개최 2개월 전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레벨 I 회원 지위를 복원한다.

8.2.2 준회원: IOC가 승인한 NOC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또는 자치령의 회원국가협회. 준회원은 등급 3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준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으나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8.2.3 임시 회원: 본 규약에 규정된 제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국가협회는 임시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임시 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으나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임시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임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그 신청을 승인하면 레벨 I 회원 또는 준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 8.3 회원국가협회의 가입 신청: 세계태권도연맹에 회원 가입을 신청한 국가태권도협회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신청 서류와 500달러의 신청비 납부 증명서를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총회가 신청을 승인하면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다.
- 8.4 회원의 요건
- 8.4.1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및 관련 규칙 준수: 모든 회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원칙을 철저히 반영하여 각각의 준거 문서를 제정하고 유지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의 제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회원의 준거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원명]은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으로서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세칙, 규정과 규칙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회원명]의 규칙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칙이 서로 상충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 8.4.2 보고: 회원국가협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8.4.2.1 12년 주기로 실시되는 회원국가협회 조사에 포함되는 회원국가협회 정보와 청렴성 및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원국가협회의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이를 세계태권도연맹에 보고한다.
- 8.4.2.2 선거가 종료된 경우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국가협회 선거 양식을 비롯해 회원국가협회 정보와 청렴성 및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한다.
- 8.4.2.3 32년 주기로 실시되는 회원국가협회 조사서를 작성한다.
- 8.4.2.4 세계태권도연맹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활동 보고서를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한다.
- 8.4.2.5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한 자금 또는 현물에 대한 사용 보고서를 제출한다.
- 8.4.3 대회 참여: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키고 총회에 대표를 파견한다.
- 8.4.3.1 회원국가협회가 레벨 I 회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최소 1명의 대표를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 파견해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대회 중, 총회가 개최되기 최소 2개월 전에 열린 최근 대회에 최소 1명의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청소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유소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 세계장애인태권도 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대륙별 종합 스포츠 경기 대회

- 범아프리카게임
- 아시안게임
- 유러피언게임
- 팬아메리칸게임
- 퍼시픽게임

8.4.3.2본 규약에서 ‘1년’은 잇달아 개최된 두 번의 정기 총회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8.4.3.3자연재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규정한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선수권대회 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대륙별 종합스포츠 경기대회와 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국가협회는 레벨 II로 회원 지위가 강등된다.

8.4.3.4연회비: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를 미납한 회원국가협회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8.4.3.4.1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연회비 등급 1로 분류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집행부는 필요에 따라 특정 회원국가협회를 등급 2 또는 등급 3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등급별로 적용되는 연회비는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권고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의 집행부가 결정한다. 등급별 회비는 다음과 같다.

- 등급 1: 700달러
- 등급 2: 300달러
- 등급 3: 면제

8.4.3.4.2 글로벌회원관리시스템(이하 ‘GMS’): 회원국가협회는 「GMS 세칙」에 따라 GMS를 운용하고 GMS에 등록한다.

8.4.4 장애인태권도: 회원국가협회는 그 산하에 장애인태권도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장애인 선수들이 국제 경기와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다.

8.4.5 회원국가협회 순위 세칙 준수: 회원국가협회는 「회원국가협회 순위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세칙에는 거버넌스, 참여도, 성과, 대회 운영,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 연간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회원국가협회의 순위는 임시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이 이를 감독하며 평가 결과는 정기 총회에서 공개된다. 회원국가협회는 이 순위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순위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혜택이나 제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8.5 회원국가협회의 권리

8.5.1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대회 참가: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 8.5.2 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자격 회원국가협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시행규칙」에 따라 선발 토너먼트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 8.5.3 세계태권도연맹 대회 유치: 본 규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 경기와 교육 과정 등을 포함한 세계태권도연맹 대회를 유치할 권리가 모든 회원국가협회에 공평하게 부여된다.
- 8.5.4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 프로그램 참여: 회원국가협회는 용품 지원, 참가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8.6 회원 자격 정지: 회원국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표결과 총회의 인준을 통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i) 본 규약이나 경기 규칙, 기타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칙 또는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ii) 부적절한 거버넌스로 인해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사명과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이 자격 정지를 권고한 경우, iii) 세계태권도연맹과 소통하지 않고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 및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8.6.1 전술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사전 조치로서 회원국가협회의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8.6.2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가협회는 총회를 비롯한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식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하지 못한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가협회가 정지 사유를 시정하지 않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벌금 또는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 8.6.3 특정 회원국가협회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대륙연맹 및 NOC와 협의하여 임시 기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가협회의 선수와 임원들이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8.6.4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가협회는 정지 기간 중에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러한 요건을 그 재량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
 - 8.6.5 회원 자격 정지는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권고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제할 수 있다.
- 8.7 회원 자격 박탈: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가협회가 적법한 통지와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격 정지의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의 주인을 받아야 한다.
- 8.8 회원 탈퇴: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납부 의무 및 기타 미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년이 종료되고 4개월 이내에 탈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대륙연맹

- 9.1 대륙연맹: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국가협회는 제9.2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륙연맹을 구성할 수 있다.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 또는 위임한 업무만을 수행한다.
- 9.2 지역 경계 및 회원 자격: 대륙연맹의 관할권과 지역 경계는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9.2.1 대륙연맹은 지정된 지역 경계 내에서 다시 더 작은 단위로 지리적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정한 구역을 대륙연맹 지역(이하 ‘대륙연맹 지역’)으로 간주한다. 각각의 대륙연맹 지역은 대륙연맹이 활동하는 개개의 구역을 공평하게 대표해야 한다. 대륙연맹 지역을 설정할 때는 국가 간의 거리와 지리적 장애물,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륙연맹 지역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얻어 대륙연맹이 설정한다.
- 9.2.2 같은 대륙 또는 같은 지리적 구역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가협회도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 대륙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
- 9.2.3 오직 회원국가협회만이 대륙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국가협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없다.
- 9.3 승인: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별 대륙연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9.3.1 i)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또는 「경기 규칙 및 해설」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ii) 통상적인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 절차를 따를 경우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 세계태권도연맹은 기존 대륙연맹 지도부를 대체할 비상 지도부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 9.4 대륙연맹의 요건
- 9.4.1 규약: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하는 「대륙연맹 모델 규약」에 따라 대륙연맹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 9.4.1.1 이러한 대륙연맹 규약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하에 현지의 요구 사항에 맞춰 수정할 수 있다. 대륙연맹 규약과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이 우선한다. 이러한 규약의 상충 문제는 세계태권도연맹의 법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9.4.2 대륙연맹의 임원
- 9.4.2.1 대륙연맹의 선거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선거가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대륙연맹은 그 선거를 세계태권도연맹의 선거가 열리는 같은 장소에서 1일 먼저 실시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9.4.2.2 대륙연맹 총회에서는 통상 대륙연맹 집행위원의 최소 3분의 2를

선출한다.

9.4.2.3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은 해당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륙연맹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된다. 참관인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9.4.3 대륙연맹 선수권대회: 대륙연맹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감독하에 2년마다 개최되며 개최 도시는 대륙연맹 총회에서 선정한다. 대륙연맹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같은 연도에 개최될 수 없다.

9.4.4 대륙연맹은 대륙연맹 장애인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와 같은 장애인태권도 활동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9.4.5 대회 일정: 대륙연맹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기타 대회의 일자와 장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 일정표를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달리 승인한 경우, 그리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지침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경기 결과는 경기 종료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대회 보고서는 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관련 문서를 비롯해 보도 자료 및 미디어 콘텐츠 일체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9.5 보고 및 기록

대륙연맹은

9.5.1 대륙연맹의 모든 공식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9.5.2 운영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 및 재무 예산이 명시된 운영 계획을 매년 제출한다.

9.5.2.1 연간 운영 보고서에는 교부된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기금으로 수행된 대륙연맹의 개발 활동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9.5.2.2 재무 보고서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기금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대륙연맹의 회계 장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독립적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자금 사용 내역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

9.5.2.3 재무 예산이 명시된 운영 계획에는 세계태권도연맹에 요청할 개발지원기금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륙연맹은 운영 계획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9.5.2.4 대륙연맹은 「개발지원기금합의서」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지원받은 개발지원기금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9.5.2.5 세계태권도연맹은 대륙연맹에 교부된 기금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대륙연맹은 「개발지원기금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요청에 동의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9.5.2.6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기금은 대륙연맹이 직전 연도에 제출한 보고서의 무결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무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교부된다.

- 9.5.3 세계태권도연맹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활동 보고서를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한다.
- 9.5.4 제반 규정, 연례 보고서, 회의 안건, 회의록, 회의 일정, 조직도, 대륙연맹 집행이사회의 이력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대륙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9.5.5 선거를 실시한 경우 선거 후 10일 이내에 대륙연맹 선거 양식과 청렴성 및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한다.
- 9.5.6 세계태권도연맹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회원국가협회를 상대로 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질의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
- 9.5.7 다음과 같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원칙 및 지침을 준수한다.

9.5.7.1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규칙 및 규정 준수

9.5.7.2 대륙연맹의 임원 및 관계자의 사익 추구하고 관련한 정책 및 제재

9.5.7.3 투명한 회계와 정확한 부기

9.5.7.4 개발지원 목적으로 교부된 자원의 정확한 사용 내역을 세계태권도연맹에 보고

9.5.7.5 사회적 책임 정책

9.5.7.6 장애인태권도 활동을 위한 자원 할당

9.5.7.7 청렴, 윤리, 법제 분야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9.5.7.8 세계태권도연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안을 다루기 위한 분쟁 해결 제도 시행

9.6 대륙연맹의 권리

- 9.6.1 세계태권도연맹의 위임에 따라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대륙별 선발 토너먼트 개최
- 9.6.2 대륙연맹 주최 대회 개최
- 9.6.3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지원기금 신청

제10조 세계태권도연맹의 권한

- 10.1 세계태권도연맹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회원과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10.1.1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관련 규칙 및 규정 일체

10.1.2 세계태권도연맹 소관의 태권도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점적 권한

10.1.3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칙과 결정, 제재가 갖는 강제성

10.1.4 이의 신청 및 분쟁 해결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0.1.4.1 외부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세계태권도연맹 내부의 이의 신청 및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친다.

10.1.4.2 이의 신청 또는 분쟁 해결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징계 조치 및 이의 신청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0.1.4.3 이의 신청 또는 분쟁 발생 시 세계태권도연맹 내부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오직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0.1.5 세계태권도연맹과 CAS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회원과 개인은 그 결정을 준수하고 결정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0.2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개인에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포함된다.

10.2.1 세계태권도연맹의 관할하에 열리는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자

10.2.2 팀이나 회원 또는 그 산하 기관의 임원(트레이너, 코치, 팀 매니저, 대표, 대리인, 의사 등)으로 활동하는 자

10.2.3 국제 기술 임원 또는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10.2.4 연맹의 관할하에 열리는 경기를 주최하거나 주최를 지원하는 자(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내에서 여하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10.2.5 GMS 라이선스 보유자

10.3 회원은 그 관리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사람에게 내려진 처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0.4 회원이 유효한 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그 결과가 해당 회원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제4장: 대회

제11조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대회

11.1 세계태권도연맹의 관리하에 개최되는,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선정한 개최 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대회는 다음과 같다.

-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청소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월드컵팀 챔피언십 시리즈
- 세계태권도 월드컵팀 챔피언십 파이널

-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 세계장애인태권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 세계태권도 그랜드 슬램 챌린지
- 세계태권도 유스올림픽 선발전
- 세계태권도 유소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세계장애인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 세계태권도/세계장애인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
-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 세계청각장애인태권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비치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어반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 세계태권도 클럽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시범 및 격파 대회
- 세계태권도 페스티벌
- 세계태권도 가상태권도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여자 오픈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어린이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21세 이하 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
- 세계장애인태권도 오픈 챌린지

11.2 개최 도시 선정: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선수권대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 또는 국가는 대회 참가자 전원의 안전을 비롯해 모든 팀과 선수의 차별 없는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최국 정부의 최상위 관계 당국이 발행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모든 팀과 대표단이 올림픽 운동을 규율하는 기본 원칙과 규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참가해 경쟁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를 신청한 기관은 「대회운영규칙(Event Operations Rules)」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1.2.1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선수권대회의 유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수위원회가 승인한 필수 서류와 적절한 유치 도시 신청서를 신청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집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11.2.2 세계태권도연맹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유치 후보 도시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집행부는 평가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보고서 심사를 통과한 유치 후보 도시는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안 내용을 발표하게 되며 이후 집행위원회가 유치 도시를 확정한다.

11.2.3 유치가 확정된 도시는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과 유치 도시 계약을 체결한다.

11.3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 청소년 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이 두 대회는 같은 연도에 개최할 수 없다.

11.4 유스올림픽: 세계태권도 청소년 선수권대회는 유스올림픽이 열리는 연도에 개최하며 가급적 올림픽 개최 6개월 전에 세계태권도 유스올림픽 선발전과 연계하여 개최한다.

11.5 대회 일정: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대회의 일자와 장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들은 대회 일자를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안한다.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세계태권도연맹이 결정이 내려지면 회원은 모든

대회의 목록을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달리 승인한 경우, 그리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지침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완료된 모든 대회는 해당 대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가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11.6 기타 대회: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양한 국제 경기를 승인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는 대회의 전체 목록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대회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다.

11.7 경기 규칙 및 해설: 세계태권도연맹 및 그 회원이 주최 또는 승인하는 모든 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경기 규칙 및 해설」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과정

12.1 자격 과정: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 심판, 국제 코치, 장애인태권도국제등급분류사, 심사위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 취득 과정 및 보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12.1.1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침에 따라 상기 교육 과정의 운영을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1.2 세계태권도연맹 및/또는 그 회원이 진행하는 모든 교육 과정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국제 심판: 오직 세계태권도연맹이 인증한 국제 심판만이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선수권대회에서 심판직을 수행할 수 있다. 총재는 국제 심판 세미나를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준과 사전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에게 ‘세계태권도연맹 국제 심판’ 자격을 부여한다.

12.3 국제 코치: 오직 세계태권도연맹이 인증한 국제 코치만이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직을 수행할 수 있다. 총재는 국제 코치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준과 사전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에게 필요에 따라 레벨 1, 레벨 2, 레벨 3으로 등급을 나누어 ‘세계태권도연맹 국제 코치’ 자격을 부여한다.

12.4 강사: 총재는 강사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준과 사전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에게 ‘세계태권도연맹 강사’ 자격을 부여한다.

12.5 심사위원: 총재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준과 사전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에게 ‘세계태권도연맹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12.6 기술 대표: 오직 세계태권도연맹이 인증한 기술 대표만이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선수권대회를 감독할 수 있다. 총재는 기술 대표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준과 사전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에게 필요에 따라 레벨 1, 레벨 2, 레벨 3으로 등급을 나누어 ‘세계태권도연맹 기술 대표’ 자격을 부여한다.

제5장: 재무

제13조 재무

- 13.1 수입원: 세계태권도연맹의 수입은 연회비와 운영 수입, 기부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3.2 회계 연도: 세계태권도연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13.3 자금 사용 감사: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한 자금 또는 현물을 회원이 적절히 사용하였는지를 감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를 위해 회원의 회계 자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임명한 감사에게 언제든지 제공되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자금 또는 미사용 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위법 행위, 징계 조치, 이의 신청

제14조 위법 행위 신고

- 14.1 세계태권도연맹과 그 회원은 위법 행위를 신고, 식별, 시정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태권도 스포츠의 무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스포츠 관련 위법 행위란 국내외의 법률 및 스포츠 규칙을 위반하거나 스포츠의 무결성 및 스포츠 윤리를 훼손하는 작위(의무 미이행의 경우 부작위)를 말한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는 부패, 사기, 뇌물, 지위 남용(이해 충돌 포함), 자금 세탁, 승부 조작, 도핑, 학대, 괴롭힘, 차별, 폭력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4.2 확약 사항: 세계태권도연맹은 위법 행위에 대한 소통과 신고를 적극 장려하며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14.2.1 위법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소통과 신고를 장려한다.
- 14.2.2 신고 제도를 실행 및 운영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한다.
- 14.2.3 신고 제도와 관련한 적법 절차와 공정성을 보장한다.
- 14.2.4 신고 절차에서 비밀을 유지한다.
- 14.2.5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 보복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이하 ‘내부고발자 보호’).
- 14.2.6 식별된 위법 행위를 적절히 시정하고 제재한다.
- 14.2.7 신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지원한다.
- 14.2.8 신고 전용 핫라인: 세계태권도연맹은 IOC와의 협력을 통해 신고 전용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한다(IOC 핫라인: <https://ioc.integrityline.org>).

제15조 징계 조치

- 15.1 징계 조치: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의 「경기 규칙 및 해설」 제23조와 「징계 조치 및 이의 신청 규정」 제3조 및 기타 관련 규칙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개인, 참가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벌금 부과, 자격 정지 처분 및 기타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 신청

- 16.1 세계태권도연맹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조치 및 이의 신청 규정」 제4조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리해야 한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징계 조치 및 이의 신청 규정」에 따라 스위스 로잔 소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6.2 세계태권도연맹은 기본적인 원칙의 보호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규칙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회원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그 재량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징계 조치 및 이의 신청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7장: 기타 조항

제17조 비대면 회의

- 17.1 총재 또는 총재가 지정한 집행부는, 본 규약에 상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원격 통신으로만 회의를 진행할지 또는 원격 통신 회의와 대면 회의를 병행할지 여부를, 세계태권도연맹 회의를 소집한 이후를 포함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
- 17.1.1 본 규약에 상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회의 소집 통지서 발송 후에 회의 진행 방식이 원격 통신으로 확정된 경우 본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7.1.2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할 자격이 있는 회원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 통신을 통해 출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본 규약이 규정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18조 면책

- 18.1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직원 및 집행위원회가 세계태권도연맹을 대표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책임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고 그러한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여하한 시기에 여하한 관할권에서 세계태권도연맹 또는 그 직원 및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경비, 책임, 판결액 등으로부터 직원 및 집행위원회를 완전히 면책하고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한다.

제19조 지식재산

- 19.1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는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점적 재산으로서, 그러한 경기 및 행사와 관련된 권리와 데이터 일체는 세계태권도연맹에 귀속되며, 이러한 권리에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또한 현존하는 또는 미래에 개발될 수단이나 방식을 불문하고 경기 및 행사의 조직과 활용, 방송, 녹화, 상연, 복제, 접근, 배포와 관련한 권리 일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에 대한 접근 조건 및 이용 조건은 세계태권도연맹이 결정한다.
- 19.2 세계태권도연맹 재산: 세계태권도연맹의 상표와 상징, 엠블럼, 깃발, 표어, 식별 표지(‘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및 ‘세계태권도연맹 승인’ 등)를 개별적으로 또는 통칭하여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이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 19.3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와 그 이용에 관한 권리 일체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그러한 이용에는 영리 목적, 상업적 목적, 광고 목적의 이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19.4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없다. 각 대륙연맹 및 회원국가협회는 그 관할권 내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 없이 명칭 및 엠블럼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9.5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장, 단체, 개인이 세계태권도연맹의 명칭 및 엠블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대륙연맹 및 회원국가협회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할 권리를 보유한다.

19.6 세칙: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의 원형 그대로의 이용 또는 변형 이용에 관한 세칙,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식 승인을 얻지 않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법적 및/또는 징계 조치 관련 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매체권 및 상업적 권리

20.1 매체권: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텔레비전, 라디오, 사진, 영상, 인터넷, 전화 관련 권리와 그 밖의 매체권은, 그러한 매체가 오늘날에 알려져 있는지 또는 알려져 있지 않은지와 관계없이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점적 재산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서면 동의 없이 판매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러한 권리의 판매 또는 이용에 관한 협상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세계태권도연맹이 보유한다.

20.2 상업적 권리: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재산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계약을 통해 이러한 상업적 권리를 한시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1조 해산

21.1 해산: 세계태권도연맹의 해산은 총회에서 총회를 구성하는 전 회원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1.2 잔여 자원/재산: 세계태권도연맹의 재산 또는 여하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해산을 결의한 총회가 부여한다.

제22조 개정

22.1 개정: 세계태권도연맹은 본 규약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관련 커미션 및 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비실질적 변경의 승인 권한: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규정, 기타 규칙 중에서 거버넌스 관련 규칙은 법제위원회가, 기술 관련 규칙은 기술 커미션이 총회 또는 기타 의결 기구의 공식 승인 없이도 비실질적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22.2.1 비실질적 변경의 정의: 비실질적 변경이란 규칙이나 규약, 규정의 의미나 취지, 적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 수정을 말한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2.2.1.1 오탈자, 문법 오류, 서식 오류의 수정

22.2.1.2 규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나 규칙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언의 명확화

22.2.1.3 가독성 또는 일관성 향상을 위한 조항 재구성

22.2.2 검토 및 보고: 관련 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비실질적 변경은 문서화하여 차기 회의에서 총회에 보고한다.

22.2.3 분쟁 해결: 비실질적 변경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23조 해석

23.1 해석 권한: 본 규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권한은 총재에게 있으며 총재는 집행위원회 및 적절한 커미션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내려진 해석은 최종적이다.

제24조 시행

24.1 채택: 본 규약(개정 시 개정 규약 포함)은 아래 제24.1.1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날부터 시행된다.

24.1.1 집행위원회: 명확히 하자면, 2024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위 제6조2항에 따라 2025년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집행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집행위원회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별지 I: 상설 커미션 및 위원회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상설 커미션과 위원회를 둔다.

(1)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은 장애인태권도위원회에서 지명한 1인을 비롯해 개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생활체육태권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총 7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임명한다.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은 태권도의 전 세계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연구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운영하는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하고, 법제위원회와 함께 관련 규칙 및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다. 아울러 회원국가협회의 회원 자격 정지나 복원, 박탈을 비롯해 대륙연맹의 비상 지도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한다. 국제협력및개발 커미션은 회원국가협회의 연회비 조정도 권고한다.

(2) 기술 커미션

기술 커미션은 선수, 코치, 경기, 의료, 장애인태권도,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별도로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임명한다. 기술 커미션은 태권도 경기의 개최 및 관리 연구, 장비의 안전성 및 성능 연구, 태권도 경기 기술의 개선 방안 모색, 국제 심판의 효과적인 관리와 관련한 각종 문제 분석, 경기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규칙(「경기 규칙 및 해설」 등)의 개정 권고, 「규약」 제22조에 의거한, 경기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규칙(「경기 규칙 및 해설」 및 기타 규정)의 비실질적 변경 승인 등을 담당한다.

(3) 선수위원회

선수위원회는 태권도 운동 내에서 선수를 대표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수 선언」에 명시된 선수의 책임과 권리를 지지한다. 선수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커미션과 위원회, 회원국가협회 등과 협력하여 선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선수위원회의 위원은 「규약」 제5.8.9조에 따라 구성되는 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선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들 중에서 2명의 공동 위원장(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한다.

(4) 코치위원회

코치위원회는 태권도 운동 내에서 코치를 대표하며 코치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아울러 태권도 경기 개선 방법 및 관련 조치를 연구해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개발위원회

개발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제반 개발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국가와 대륙의 회원 및 지역의 교육 센터를 위한 각종 기준을 제안하고 있으며, 재원 조달과 용품 지원, 참가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태권도의 수련을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스포츠 관련 재원을 보유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기회를 모색한다.

(6)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자격 취득 과정과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교육위원회는 유능한 강사와 행정가, 선수, 코치, 심판, 일반 태권도 수련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및 개발하며 특히 온라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태권도 발전에 필요한 교육 자료와 교과 과정을 수립 또는 제안하고 있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7) 청렴위원회

청렴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청렴성 규정」에 명시된, 태권도 운동의 윤리 원칙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위원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청렴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의뢰한 선수 보호 관련 사건을 비롯한 윤리 및 청렴성 기준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집행위원회에 권고한다. 청렴위원회는 「청렴성 규정」과 그 밖의 청렴성 관련 규칙(「반도핑 규칙」 제외)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청렴성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권한이 있다.

(8)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재무 관리 문제에 관한 총회와 집행위원회, 총재, 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 운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 투명성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가 담당한다. 재무위원회는 예산안을 비롯한 재무 정보를 검토 및 사전 승인하고 중요한 재무 결정과 관련한 조언과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식과 재무 통제 절차를 갖추게 하는 한편,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재무 정책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재무위원회는 외부 감사의 선임 또는 재선임 문제를 총재에게 조언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예산 편성 및 재무 기능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재무위원회는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 법률에 따라 작성된, 세계태권도연맹의 완성 재무제표를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전, 재무제표의 내용 및 중요한 회계적 판단을 검토한다.

(9) 경기위원회

경기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태권도 경기의 개최와 관리 방식 개선에 필요한 요건을 연구한다.

(10) 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징계 조치 및 이의 신청 규정」에 따라 진정과 조사, 징계,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심사와 권고 업무를 담당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과 세칙, 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규약」 제22조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 및 거버넌스 관련 각종 규칙과 규정에 대한 비실질적 변경을 승인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11) 의료위원회

의료위원회는 태권도 경기와 관련한 의료 업무를 연구하고 필요한 지침을 수립한다. 의료위원회는 선수의 건강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태권도연맹 「의무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다.

(12) 장애인태권도위원회

장애인태권도위원회는 장애인태권도 경기(겨루기, 품새)의 체계와 조직, 관리를 비롯해 각종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형식의 개발을 연구한다. 장애인태권도위원회는 장애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 및 장려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선수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3) 장애인태권도등급분류위원회

장애인태권도등급분류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수 등급 분류 규칙」과 스포츠 등급 및 등급 분류 절차를 연구 및 개발하는 한편 세계태권도연맹이 「IPC 등급 분류 규정」과 그 모범 사례를 준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장애인태권도국제등급분류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새로 등록된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평가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장애인태권도등급분류위원회는 장애인태권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14) 품새위원회

품새위원회는 품새 태권도 경기의 조직 및 운영을 검토하고 경기 개선 방안 및 「품새 경기 규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국제 품새 심판 및 코치를 위한 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품새 경기 규칙」과 「국제 품새 심판 및 코치 관리 규정」의 개정안을 수립한다.

(15) 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경기 규칙 및 해설」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필요한 요건 연구, 국제 심판의 효과적 관리 방안 모색 및 국제 심판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등을 담당한다.

(16) 지속가능성위원회

지속가능성위원회는 성과에 기반하고 IOC의 지속 가능성 전략에 부합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속 가능성 안건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성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일상 활동에서 지속 가능성 원칙과 실무를 접목하고자 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을 뒷받침할 권고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차원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무결성과 포용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7) 생활체육태권도위원회

생활체육태권도위원회는 태권도 스포츠의 관리와 운영에 청년과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 태권도 선수와 수련자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연구한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및 외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모든 수준에서 태권도를 통한 사회 발전 및 태권도 케이스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집행위원회에 조언한다.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제정: 1973년 5월 28일

개정: 1977년 9월 14일

개정: 1980년 11월 15일

개정: 1982년 2월 23일

개정: 1983년 10월 19일

개정: 1986년 7월 3일

개정: 1987년 10월 7일

개정: 1989년 10월 7일

개정: 1991년 10월 28일

개정: 1993년 8월 17일

개정: 1995년 11월 17일

개정: 1997년 11월 18일

개정: 1999년 6월 1일

개정: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5년 4월 12일

개정: 2006년 7월 25일

개정: 2008년 5월 6일

개정: 2009년 2월 3일

개정: 2010년 3월 2일

개정: 2010년 10월 7일(제1차 전면 개정)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2011년 8월 22일

개정: 2012년 4월 3일

개정: 2012년 12월 26일

개정: 2013년 7월 14일

개정: 2014년 3월 19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5년 5월 11일

개정: 2016년 11월 15일

개정: 2017년 4월 11일

개정 2017년 6월 23일

개정: 2017년 12월 4일

개정: 2018년 4월 5일

개정: 2019년 5월 14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10월 6일

개정: 2020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5월 8일(제2차 전면 개정)

개정: 2021년 11월 23일

개정: 2022년 4월 29일

개정: 2023년 1월 27일

개정: 2023년 12월 14일

개정: 2024년 9월 30일

개정: 2025년 4월 3일

세계태권도연맹 발행